

아르헨티나의 特許制度



① 特許制度의 特徵

아르헨티나의 特許法은 1864年 10月에 制定되어 그 歷史가 100년을 넘은 오랜 沿革을 지니고 있으며 同 法制定以來 9 차례에 걸쳐 部分的으로 改正補完하였다. 그 主要內容을 보면 外國特許權의 確認 및 表示에 관한 決定(1906, 1911), 出願方式의 改正(1957), 特許抗告諮詢部設置令(1960), 特許廳長의 出願에 관한 決定權賦與規則(1964), 出願中의 權利讓渡에 미치는 규칙(1966), 標章權讓渡의 登錄申請條件에 관한 규칙(1966), 先願에 따른 優先權主張의 節次에 관한 규칙(1967) 등이다.

이 나라에서의 制度上의 特許要件는 產業의 모든 分野에서 新規한 發明이나 發見을 한 創作者는 이것을 實施할 權利를 專有할 수 있고 그것이 國內에서 創始되었거나 外國에서 창시되었어도 無妨하나 다만 出願人은 發明者 또는 그 權利의 承繼人이어야 한다.

이나라 特許法에서의 신규한 발명 또는 발견이라 하는 것은 신규의 產業의 生產物, 신규한 方法 및 產業的 結果 또는 산업적 生產物을 取得할 目的으로 한 既知方法의 신규한 應用을 말한다.

그러나 醫藥이나 出願前에 國內外刊行物에서의 公知된 것, 산업상 利用方法이 指示되지 아니한 純粹理論의 것, 또는 公序良俗과 國內法令에 違反되는 발견 또는 發明은 特허를 받을 수가 없다.

한편 우리나라와는 1972년 8월 14일에 特許 및 商標協定을 締結하여相互間에 內國民待遇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나라는 巴里條約의 加盟國으로서 同條約第4條에 規定하는 先出願의 優先權을 享有하려는 者는 출원인의 主張에 따라 외국에의 출원과 同一하게 看做하여 우선권을 認定하고 있다. 다만 1967년 2월 10일 이전에 외국에 출원한 것은 法改正에 따라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 나라의 特許權存續期間은 當該發明의 價值 및 출

金 明 信
<辨 理 士>

원인의 希望에 따라 5년, 또는 10년으로 하며 外國特許權의 確認處分은 10년으로 制限하되 原特許의 존속기간의 滿了됨과 함께 消滅된다.

한편 特허 업무를 管掌하는 官廳인 特허청은 經濟勞働省의 所屬으나 되어있고 特許廳長과 副廳長 4名, 數十名의 書記官과 窓口職員으로 構成되어 있다.

② 特許制度의 概要

1. 出願 및 登錄

발명에 관한 特허권을 취득하려는 자는 特허청장 앞으로 出願書 2通과 25센타보의 收入印紙를 貼付하여 首都內居住者は 特허청에, 그리고 各州에 거주하는 자는 州郵遞本局에 提出하여야 한다.

출원서에는 발명의 明細書, 圖面 및 見本과 提出物件의 目錄을添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원서류를 우체국장 앞으로 제출할 경우에 출원인은 명세서, 도면 및 檢본이 들어 있는 包袋를 封緘하여 本人의 印章으로 封印한 것을 自己의 費用으로 特허청에 發送하도록 되어 있다.

출원인은 출원할 때 登錄料金의 半額을 納入하고 残存하는 반액은 존속기간동안 分割하여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출원인은 所定의 요금을 내고 願書에 그 希望하는 特허권의 존속기간을 記載하여야 하며 또한 出願書類는 スペイン語로 作成되어 原文을 訂正, 追加, 刪除할 때는 末尾에 對照文을 付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허청장은 출원을 受理했을 때에는 출원에 관계되는 發明이 新規性이 있는지의 與否, 國內外刊行物에서의 公知 및 公序良俗에 違反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가름하여 拒絕의 理由를 發견하지 못하면 特허권을 賦與하게 된다.

特許證은 政府의 承認을 받았다는 要旨를 부기하여 발행하는데 特허증에는 廳長 및 書記官이 署名하고 明細書 및 도면의 謄本을添付하고 있다.

특허권의 賦與에 대해 異議(無効)를 申請할 수가 있고 특허권부여를 거절하는 處分에 대해서는 10日이내에 經濟勞動省에 抗告할 수가 있다.

경제노동성은 이에 대한 필요한 報告를 수리한후에 그 處分을 확인 또는 取消한다. 그 처분을 확인했을 경우에는 납입한 요금의 金額을 没收한다.

2. 追加特許

특허된 발명 또는 발명을 改良한 者는 追加特許證의 존기간은 主特許權의 殘存期間으로 하고 10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다만 주특허권의 존기간의 2분의 1이 이미 經過되었거나 또는 當該改良發明이 生產費, 生產時間, 人力 및 物品에 대한 危險을 半減하여 기타의 類似한效果를 發生했을 때는 여기에 制限받지 않고 特허청장이 허여할 수 있는 존기간을 裁量으로 定할수가 있다.

추가특허권을 취득하는 節次는 主特許의 경우와 同一하며 요금은 當該出願인이 主된 설명에 관계 있는 特허권자일때는 당해요금의 4분의 1, 第3者일 경우에는 2분의 1을 납입해야 한다.

추가특허권을 취득한 자가 제3자일 경우에는 자기의 발명을 獨占的으로 實施할 권리가 없고 다만 特허청장이 改良發明의 重要性을 考慮하여 決定하는 額의 使用料를 原發明者에 支拂할 경우는 실시권리를 가질 수가 있다.

따라서 원발명자는 추가특허에 관한 사용료를 受取하던가 또는 개량발명자와 競合하여 개량발명을 실시할 選擇權을 가질수가 있다.

3. 假特許權

발명 또는 개량발명의 창작에 從事한 자는 假特許權의 부여를 출원할 수가 있고 가특허권의 효력은 1년간 존속하게 되며 기간이 滿了되면 그 효력을 更新할 수가 있다.

가특허권을 취득하려면 발명의 對象 및 實施方法을 記載한 명납서의 提出등 原特許出願方式과 같으며 50아르헨티나의 요금을 납입해야 한다.

특허청장은 가특허권의 출원을 수리한 후 遷滯없이 가특허권의 賦與節次를 貫아 自己責任下에 特別帳簿에 登錄하고 當該特許發明에 關係되는 文書와 함께 秘密文書로서 保管하게 된다.

그러나 刊行物에 公知公用되었거나 美風良俗에 違反되는 발명은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가특허권을 부여할때에는 미리 가특허권취득자에게 通告하지 않고 가특허권의 존속기간중에 他人에게 특

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措處를 取하고 있다.

4. 特許權의 移轉

특허권을 취득한 자는 자기의相當한 條件을 附加하여 권리의 讓渡할 수가 있는데 이 양도는 公證書에 의하거나 소정의 요금(존속기간의 납입요금)을 全額納入할 것을前提條件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 양도는 第3者에 對抗하기 위해서 首都圈에서는 특허청에, 그리고 地方에서는 郵遞本局에 그 要旨의 등록을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當事者가 양도증에 別段의 규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當該讓源行爲에 의한 特許處分으로 발생한 모든 권리가 양도하게 되는 것이다.

5. 特許權의 無効 및 消滅

부여된 特허권이 불특허 사유에 해당되거나 특허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했을 때는 無効가 되며 또한 當該發明의 창작에 關與하지 않고 타인의 故意로 자기가 正當權利者임을 作為하여 特허권을 취득했거나, 명세서 도면의 기재가 不正確, 不完全, 特許發明이 아닌 발명을 基礎로 하여 추가특허권을 취득했거나, 이미 消滅한 外國特許에 基礎하여 確認特許權이 부여되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특허권의 効力은 特許權賦與日로부터 2년간 그 特허發明을 實시하지 않거나 實시가 中止되었거나 또는 존속기간이 滿了되었을 때 消滅된다.

그리고 利害關係人은 地方法院에 무효 또는 소멸에 관한 訴訟을 提起할 수가 있다.

지방법원의 審理는 卽決節次에 따라 하고 證據調查期間은 裁判官의 裁量으로 정하는데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증거조사기간이 만료된 10일이내에 재판판단은 判決을 내리며 敗訴者가 裁判費用을 負擔할 것을 命하게 된다.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不服할 때는 3일 이내에 最高法院에 上告할 수가 있으며 최고법원은 特허청의 報告를 기초로 하여 다시 심리하게 된다. 그리고 最終判決이 確定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公表하도록 特허청장에게 그 要旨를 通告한다.

특허권자의 권리의 侵害한 자는 偽造罪로서 50~500아르헨티나페소의 罰金 또는 1~6개월의 禁錮에 處하고 위조물을 没收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침해의 사실을 知悉하고 발명에 관계되는 물건을 販賣, 展示, 導入 및 傳達하는 행위로서 침해자에 協力한 자도 여기에 해당하여 處罰을 받게된다.